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529370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7. 22.

판결 선고 2015. 8.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4. 10. 5.까지 연 6%의, 2014. 10. 6.부터 2014. 12. 4.까지 연 9%의, 2014. 12. 5.부터 2015. 2. 26.까지 연 15%의, 2015.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총주시 D 대 535.3㎡에 관하여 2014. 7. 30.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50,172,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나. 피고 C은 원고에게 50,172,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2. 8. 31. 피고 B에게 2억 5천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C과 피고 B 소유의 충주시 D 대 5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C의 남편 E는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3) 피고 B은 2014. 7. 30. 피고 C과 아래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7. 31. 접수 제339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피고 B은 피고 A의 E에 대한 채무를 피고 C에게 지급한다.

- 피고 B이 피고 C에게 2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음을, 피고 A이 E에게 1억 8천만 원의 유류대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 B은 위 차용금 및 유류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이전한다.

- 피고 C이 후일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9억 원을 초과하는 이익금이 발생하면 모든 비용을 정산하여 제3채권자 F에게 1억 원까지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잉여금은 피고 B에게 지급한다. 처분 후 손실 발생시 피고 B은 별도로 변제하여야 한다.

4) 피고 C은 2014.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충주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 4억 5천만 원(2005. 8. 25. 설정, 채권최고액 5억 9천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고, 같은 날 위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에서 9호증, 을다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를 피고 B이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5일 만에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고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이 오랫동안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거래 채권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일한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은 주식회사인 피고 A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채권은 피고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다) (1) 피고 C은, 시가가 7억 172,400원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8억 3천만원 상당의 선순의 근저당권[서충주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5천만 원+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8천만 원(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2억 원+E의 피고 A에 대한 유류대금 채권 1억 8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기때문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7억 172,400원이고,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피담보채무가 4억 5천만 원인 서충주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피고 A의 E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2012. 8. 31.이고 E가 피고A에게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4. 1.부터인 점,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채무자는 피고 B이고 E에 대한 채무자는 피고 A인 점,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은 피고 C이 당시 피고 B에게 빌려 준 2억 5천만 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피고 A의 E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서충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 C이 갚아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도 말소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이루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대물변제계약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으로 추인되는 7억 172,40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서충주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4억 5천만 원의 채무+피고 C에 대한 2억 원의 채무)을 공제한 50,172,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가액 배상을 명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 B와 C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50,172,400원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0,172,400원과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영희

청 구 원 인

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1.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회사'라 합니다.)은 2014. 3. 1. 주식회사 제이전기[이하 '(주)제이전기'라 합니다.]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참조). 피고 회사는 원고와 아래의 표와 같이 (주)제이전기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갑 제2호증의 2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참조.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주) A	(주)제이전기	G	59,400,000	2014. 3. 1. - 2014. 8. 25.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한편, 피고2. B 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 내용, 갑 제3호증의 2 연대보증인 입보사유 확인서 참조.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합니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인 (주)제이전기와 계약 위반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B 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입니다.

나. 보험금의 지급과 구상채권의 취득

(주)제이건기는 피고 회사가 대여금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2014. 8. 7.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보험금 청구서 참조). 이에 원고는 2014. 9. 5. (주)제이건기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59,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보상심사서 참조).

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구상채권의 범위

따라서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주)제이건기에 지급한 보험금 5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4. 9. 6.부터 2014. 10. 5.까지는 연 6%의, 2014. 10. 6.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9%의, 2014.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